

3)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500	700	1,000
4)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500	700	1,000

부 칙

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(A)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19년 5월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,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(A)를 채택함에 따라,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 부속서 에이(A)부터 씨(C)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과 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정하는 한편,

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 재 인 ㉠

2020년 7월 14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조명래

●대통령령 제30848호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의4(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)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(이하 “반입정화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.

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.

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

2. 대표자

3. 기술인력

4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·폐쇄·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

5. 반입정화시설의 면적(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,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.

1.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
2.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3.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·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(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4. 제3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

5.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
별표 2의 제목 중 “제17조의4제1항”을 “제17조의4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사무실

별표 2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※ 비고

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별표 2 제3호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

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4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4제1항·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,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나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7월 14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조명래

●대통령령 제30849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 대상란 중 “제한조치로”를 “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